

#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252 |
|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2.

제출자 : 서초구청장

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주 5일 근무제」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, 「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- 가.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 16조의2)
- 나.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1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[서울시 인사12135-1046(2002.3.2 8.)호]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생략
- 라. 기타
 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“(토요전일근무제)”를 “(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항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”을 “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토요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$$\circ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제23조제5호의 “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”을 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<b>제16조의2(토요전일근무제)</b>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br/>         ②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 | <p><b>제16조의2(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</b> ① ..... 휴<br/>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.....<br/>         ②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.....</p>  |
| <p><b>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/b> ① 결근일수· 휴직일수·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  | <p><b>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/b> ① 결근일수·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  |
| <신설>   | <p>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=(12월-당해연도 휴직기간)/12월×당해연도 연가일수</li> <li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li> <li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li> </ul> <p><b>제23조(공가) (생략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생략)</li> <li>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</u>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li> <li>6. ~ 8. (생략)</li> </ol> |
|  | <p><b>제23조(공가) (현행과 같음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<u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</u> .....</li> <li>6. ~ 8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</b> <b>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  |